

평택 I.P.C 지역주택조합

(우편번호 459-822)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506

TEL:(031)662-1449 FAX:(031)662-1448

문서번호 : 평택IPC조합 제2017-78호

시행일자 : 2017. 11. 10.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특별공급 업무담당관

제 목 : 평택I.P.C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요청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조합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31-1번지 일대 평택I.P.C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중이며, 금번 잔여세대분에 대해 일반분양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3. 당 조합에서 분양예정인 평택 송탄역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와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귀 청에 특별공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대상자 선정 후 특별공급 신청접수 전일인 **2017년11월 21일(화)오후5시**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분양개요

- 주 택 명 : 평택 송탄역 서희스타힐스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31-1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지하1층~지상 12~14층, 총 527세대중 일반분양 1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

주택형 (타입별)	장애인				국가 유공자	국방부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합계
	경기도	평택시	서울시	인천광역시				
66				1	1	1	1	4
84A	1	1	1	1	1	1	1	7
84B	1	1	1					3
계	2	2	2	2	2	2	2	14

첨부: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1부. 끝.

수신처 참조 : 장애인특별공급(경기도청, 평택시청, 인천광역시청, 서울시청)

국가유공자(경기남부보훈처), 중소기업근로(중소기업청), 군인(국군 복지단)

평택 I.P.C 지역주택조합장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2.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31-1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지하1층~지상 12~14층, 총 527세대중 일반분양 1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시 공 사 : (주)서희건설
- 전본주택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506번지 서희스타힐스 모델하우스(☎1600-0657)
- 배정내역 : 기관추천 14세대

주택형(타입)	일반분양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66	44	66.9786	22.5085	89.4871	4
84A	70	84.6217	22.7054	107.3271	7
84B	31	84.8951	22.9805	107.8756	3
소계	145				14

2. 특별공급 일정계획

구분	일자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예정)	2017.11.17.(금)	
전본주택 개관일(예정)	2017.11.18.(토)	
특별공급 신청일자	2017.11.22.(수) 10:00~15:00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2017.11.22.(수) 17:00	
동.호수 발표	2017.11.30.(목)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분양가격 (예정)

① 아파트 분양가격

(단위:원)

주택형(타입)	구분	분양가격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비고
			계약 체결시	각 6회분할 납부	입주시	
66	2층	308,000,000	61,600,000	184,800,000	61,600,000	
	3층	312,000,000	62,400,000	187,200,000	62,400,000	
	4층이상	316,000,000	63,200,000	189,600,000	63,200,000	
84A	1층	366,000,000	73,200,000	219,600,000	73,200,000	
	2층	370,000,000	74,000,000	222,000,000	74,000,000	
	3층	374,000,000	74,800,000	224,400,000	74,800,000	
	4층이상	378,000,000	75,600,000	226,800,000	75,600,000	
84B	1층	367,000,000	73,400,000	220,200,000	73,400,000	
	2층	371,000,000	74,200,000	222,600,000	74,200,000	
	3층	375,000,000	75,000,000	225,000,000	75,000,000	
	4층이상	379,000,000	75,800,000	227,400,000	75,800,000	

② 발코니 확장가격

(단위:원, 부가세포함)

66	84A	84B
10,000,000	12,000,000	12,500,000

4. 특별공급 자격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5. 특별공급 기관추천 동·호수 결정 방법

-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고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음.

6. 신청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rt2you.com)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장애인 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로 접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음.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7. 유의사항

- 당 아파트는 중도금대출 선정 금융기관이 없으므로 중도금은 계약자가 납부일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아파트입니다.
- 상기 아파트 가격 및 발코니 가격은 예정가이며, 입주자모집공고시 확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1600-065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